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조명용절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 UL, CE, ISO, 조달청 우수제품 등을 인증 받았습니니다. 제품에 대한 국제공인기관 공인시험 성적서를 받으려 인증기관에 문의한 결과 조명용절전기에 대한 시험규정 및 방법이 없어 시험 성적서를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시험 규정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요?

A 문의하신 조명용절전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이 아니므로 개별안전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전기적인 일반시험으로서 필요한 시험항목 등을 제시하고 시험을 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는 시험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Q KS 인증 신청을 위해서는 검사설비 등을 구비하여 검교정을 필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개월 관리실적 중에 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 국가공인 시험기관에 제품시험을 의뢰한 후 3개월이 지나야 KS인증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설비 등과는 달리 성적서가 발급되어 그 결과가 합격이라면 3개월이 되지 않아도 KS인증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A KS인증은 표시 지정된 광공업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기술 종목을 사용하는 자가 3개월 이상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기법을 도입하여 관리한 후 KS수준 이상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능력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필요에 따라 인증기관에 KS표시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기관(한국표준협회)은 당해 제품의 인증 심사 기준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업체에 대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별로 KS표시 인증을 하는 제도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검교정을 필한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의 관리는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중 일부이며, 제품에 대한 3개월 동안의 생산 및 판매량 역시 공장심사를 위해 조사하는 것이고, 제품의 성능에 대한 예비심사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공장심사 합격후 인증심사원이 채취한 시료에 대해 제품심사를 실시합니다.